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4435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3. E

4. F

5. G (개명전: H)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503,755,555원 및 그 중 171,181,666원에 대하여,

나.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금원 중,

1) 피고 F는 167,918,518원 및 그 중 57,060,555원에 대하여,

2) 피고 G은 111,945,678원 및 그 중 38,040,370원에 대하여

각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D,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 E 및 I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2139,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법원은 2009.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5. 최종 확정되었다.

■ 선행소송 판결 주문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5,542,800원 및 그 중 15,826,800원¹⁾에 대하여는 2008. 12. 6.부터, 199,716,000원²⁾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각 2009. 3.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피고 D, E 및 I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금원 중 199,716,000원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2)

나. I가 2014. 4.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 피고 F, 자녀 피고 D, E, G 이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피고 F, D, E, G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 느단476), 2014. 7. 31.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선행소송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중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구상금 채권원리금은 2019. 5. 31. 기준 503,755,555원(=원금 171,181,666원 + 이자 332,573,889원)이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³⁾,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회사, D, E은 연대하여

503,755,555원 및 그 중 171,181,666원에 대하여, ②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금원 중, 피고 F는 167,918,518원(=503,755,555원 x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57,060,555원(= 171,181,666원 X 3/9)에 대하여, 피고 도은 111,

945, 678원(= 503, 755, 555원 X 2/ 9) 및 그 중38, 040, 370원(= 171, 181, 666원 x 2/9)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D이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직접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1)피보험자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인 보험계약에 관한 구상금이다.

2)피보험자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인 보험계약에 관한 구상금으로, 피고 D, E 및 I가 연대보증하였다.

3)원고가 작성한 '지연손해금 산출내역(갑 제1호증)'에 의하면,원금은 당초 199,716,000원에서 2010. 7.경 약 2,600만 원이 변제 되고,2016. 7.경부터 2019. 5.경까지 매달 10만 원 내외의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각 변제가 시효중단 사유인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 증거이

없으므로,선행소송 판결확정일로부터 계속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2010. 7.경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가 무렵에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